

『2024 육아기부모 단축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참여대상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 23일

(재) 경 상 북 도 경 제 진 흥 원 장

I

사업개요

- ☐ 신청기간: 2024. 7. 23.(화)로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
- ☐ 지원대상: 경상북도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
- ☐ 지원규모: 500명 정도(선착순 지원)
- ☐ 지원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중 고용노동부 미지급분 보전지원
 - 통상임금200만원초과~400만원이하근로자, 10시간 보전, 월최대50만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4년 7월 1일) 전 - 최초 5시간 지원(월최대 25만원)
- ☐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고용노동부) 신청 후 3개월 이후
단, 5~6월분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령자(고용노동부) 바로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gbwork.kr)
- ☐ 선정방법: 자격 요건 충족 및 서류 구비 완료순 선정

II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포함)가 있는 근로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① 최초 10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령자(고용노동부)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4년 7월 1일) 전 - 최초 5시간 지원(월최대 25만원)
 - ② 급여 감소분 보상·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10시간 보전지원)
 - * 통상임금(기본급+고정급)-고용노동부 기준(통상임금 기준이 상이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정기준 준용)
 - ③ 직장 및 주소는 사업기간내 유지

□ 제외대상

- ①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자(고용노동부)

지원제외 근로자(고용노동부)

-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외국인(거주(F-2) . 영주(F-5) .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 고용보험 미가입자

- ② 사업주로부터 단축근무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 받는 자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

- ④ 기타 경상북도,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금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중 고용노동부 미지급분 보전지원
(통상임금200만원초과~400만원이하근로자, 10시간 보전, 월최대50만원)

※ 사업주부담급여+육아기단축급여 10시간 단축분(고용노동부)+단축급여 미지급분(10h보상 :최대 50만원)

* 통상임금(기본급+고정급)-고용노동부 기준(통상임금 기준이 상이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정기준 준용)

① 지원기간(신청일로부터 ~ 2024.12월): 최대 8개월분 지급

② 통상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금액(고용노동부) + 지급금액(부족분)

- 월급여 300만원 급여수령시: 225만원(사업주)+50만원(고용노동부)+25만원(경상북도)

- 월급여 400만원 급여수령시: 300만원(사업주)+50만원(고용노동부)+50만원(경상북도)

지급기준(별첨) :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 지급 기준표』 참고

통상임금(기본급+고정급)-고용노동부 기준

1. 기본급

2. 고정급

2-1.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 금융, 출납, 반장 소장 등)

2-2.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 조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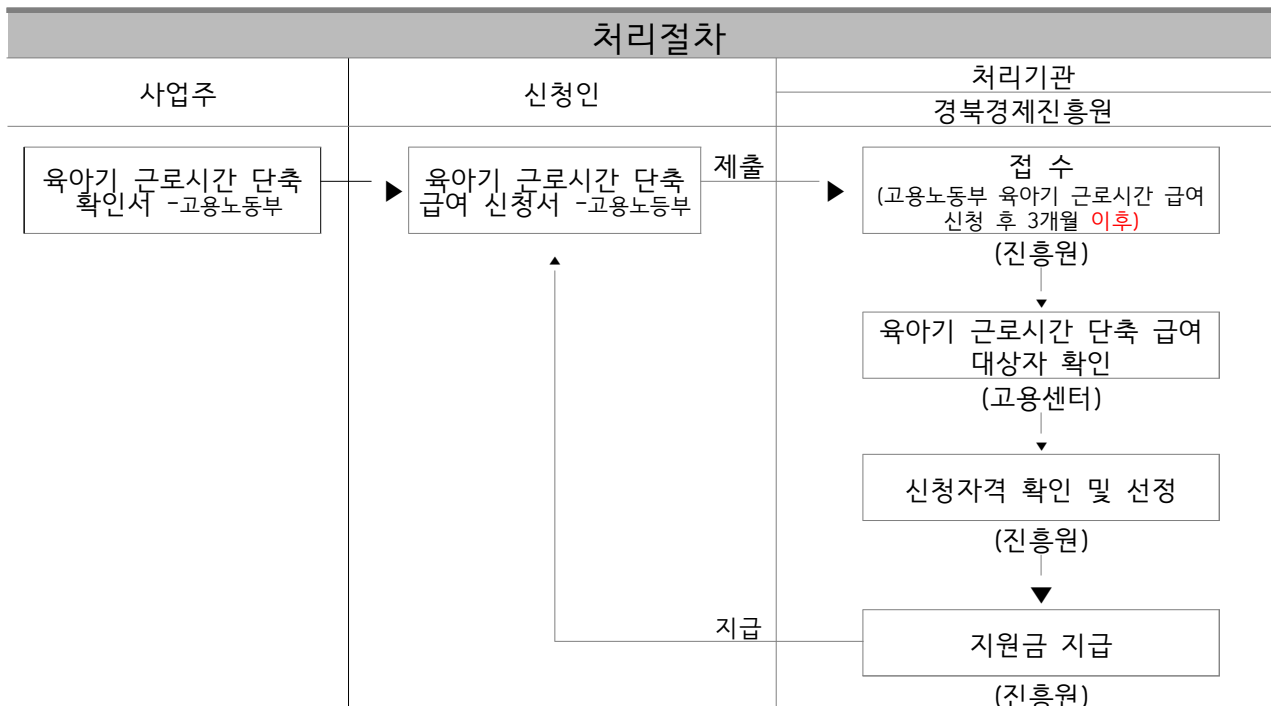
2-3.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 자격, 면허, 특수작업, 위험 등)

2-4.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 능률 등)

2-5. 기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처리절차



Ⅲ

신청방법

※서류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기간: 2024. 7. 23.(화)로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gbwork.kr)
-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단 계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사항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1단계 (필수제출)	육아기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부정수급확인서	- 신청자 본인 인증후 온라인신청페이지에서 해당내용 직접 작성 ※ 신청주소: www.gbwork.kr
	① 주민등록초본(신청일 발급)	- 경상북도 거주지 확인 - 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사업자등록증	- 경상북도 사업장 및 사업장 현황확인
	③ 월급명세서 및 급여 이체확인증	-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전 3개월분 -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후 해당월(모두) - 급여 지급 내용 및 소득 확인(5월부터 해당자는 해당월부터)
	④ 근로계약서 등	- 근로시간, 소득 등 확인(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전 후)
	⑤ 통장사본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사본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		
1차 보전 금액 지원		
↓		
2단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월급명세서 및 급여이체확인증(해당월)	- 선정일이후 분기별 서류 제출(별도 안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사업장 근무여부 확인
↓		
2차 보전 금액 지원		

- ☐ 선정방법: 자격여부 및 신청완료자(구비서류 제출 완료) 대상 사업비 소진시까지
 - (1차 선정) 자격요건 충족 및 신청서류 완료순 선정
 - (2차 선정) 1차 선정자 중 자격요건 유지자 선정
- ☐ 선정발표: 개별통지(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 1개월 단위로 서류검토 후 다음달(익월) 10일경 선정
- ☐ 지원기간(신청일로부터 ~ 2024.12.31): **최대 8개월분 지급**

※ 단, 1개월 미만은 지원금 미지급 (예시 5.2~12.31일 경우: 7개월)

- **지급방법** :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사업 공고일 이후 온라인 신청자 중 선착순 선정 및 분기별 지원
 - ※ 자격요건확인을 위한 분기별 서류 검토 후 분기별 익월 말경 지급
 - **1차(7~9월) 지급**: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 ※ 5,6월분 해당자가 있을 경우 1차분에 소급 적용 지급
 - **2차(10~12월) 지급**: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지급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월급명세서 및 급여이체확인증(3개월분)
-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를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 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음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사업 신청 후 미선정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문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92)으로 문의